

인터넷 電子商去來契約에 관한 法的 考察*

韓成一**

-
- I. 序論
 - II. 電子商去來와 관련한 立法例
 - III. 電子商去來契約과 관련된 主要 法的 問題
 - IV. 結論
-

I. 序論

최근 情報通信技術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電子商去來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貿易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電子商去來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電子商去來란 컴퓨터통신망을 바탕으로 하여 팩스(Fax), 電子郵便(E-mail), 電子文書交換(EDI), 電子資金移替(EFT),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假想空間(cyber space)에서 이루어지는 商去來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電子商去來는 특정기업간의 電子商去來 즉, 폐쇄적인 EDI 거래, 불특정 기업간의 電子商去來 즉, 개방적 EDI 거래 그리고 인터넷 電子商去來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 電子商去來는 인터넷과 아무런 관련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 문서가 없는 거래환경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로 EDI와 같은 기업간의 去來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동주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東洲대학 비즈니스정보계열 조교수.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가 확산되고 앞으로 인터넷상의 電子商去來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電子商去來의 논의는 당연히 인터넷상에서의 電子商去來가 중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電子商去來에서 인터넷을 인프라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첫째, 인터넷이라는 기존의 통신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通信網構築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투하되지 않고도 인터넷이라는 저렴한 通信網을 이용하여 전 세계인을 상대로 商去來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이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터넷은 기존의 광고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막대한 廣告效果 및 마케팅效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電子商去來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래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電子商去來에서는 종전의 통신수단의 차이로 말미암아 契約締結의 方法도 다르고 契約의 履行에 있어서도 상이한 점이 많다.

또한 電子商去來에 대한 法理도 종전의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즉, 電子商去來는 법적 측면에서 電子文書에 어떠한 法的인 價值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電子文書의 文書性의 問題, 電子商去來의 契約에 따른 契約締結時期 및 瑕疵의 問題,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問題, 電子署名을 기초로 하는 電子認證問題, 電子決濟 특히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問題, 租稅 및 關稅問題, 電子約款에 관한 問題, 電子商去來가 國際的으로 이루어 질 경우 準據法의 問題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電子商去來의 特性을 고려하여 電子商去來에 대한 法的 問題중 電子商去來契約 부분만을 연구의 범위로 삼아 電子商去來時 발생할 수 있는 法的 紛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電子商去來와 관련한 立法例

1. 電子商去來에 관한 國際法規

(1) 電子商去來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1966년 유엔 國際貿易法委員會(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世界貿易去來 관련 法律을 통일함으로써 貿易去來를 활성화하고 去來當事者들에게 法의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UNCITRAL 사무국은 電子文書方式에 의한 國際去來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1984년 '자동문서처리의 법적측면'(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985년에 개최된 제 18 차 UNCITRAL에 제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UNCITRAL 내에 'EDI 및 관련 통신수단의 법적 측면에 관한 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의 작성을 위한 작업부(Working Group)가 구성되어 1995년 제 28 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작업부회의에서 모델법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을 가지고 1996년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UNCITRAL 제 29 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EDI 모델법초안을 심의한 결과 '電子商去來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이하 UNCITRAL 모델법이라 칭함)이 최종 채택되었다.

이 UNCITRAL 모델법은 國際去來에 적용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법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國際去來法을 통일시키고 조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 하였는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¹⁾ 첫째, 電子商去來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電子商去來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의 제거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관련 國際協約의 유용

1) <http://my.netian.com/~profsjh/wyc/ec-law.htm>.

한 해석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넷째, 國際去來에서 經濟性과 效率性이 촉진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UNCITRAL 모델법의 특징은 첫째, 모델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電子商去來法을 제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각국이 國內立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적용범위를 國際去來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신 각국이 법의 적용을 國際去來로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電子商去來의 성질에 비추어서 이해하여야 하는 규정인데, 국경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電子商去來에 있어서는 國際去來의 성질을 갖는 부분만이 적용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電子商去來의 법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UNCITRAL 모델법은 商社去來에 적용된다. 즉, 消費者去來 및 公的去來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UNCITRAL 모델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電子商去來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標準化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EDI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아울러 電子郵便을 통한 電子文書의 電送,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식의 文書 교환까지도 그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UNCITRAL의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모델법

國際的인 電子資金移替가 증가함에 따라 電子資金去來에 관한 규정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UNCITRAL에서는 ‘電子資金去來에 관한立法指針’(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을 1986년에 작성한 이후 1992년에는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을 채택하였다.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모델법의 주요내용은 美國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내용을 많이 원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은 送信銀行과 受信銀行이 각기 다른 국가에 있는 國際의 資金移替로 하고, 둘째, 銀行이 거래상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때에는 고객이 無權限去來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資金移替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 移替依賴銀行은 원칙적으로 資金移替 依賴人에게 이자를 붙여 資

金移替 依賴資金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넷째, 資金移替가 지연된 경우에는 당해 遲延에 대해 責任이 있는 銀行이 受取人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부담하되 그 범위는 銀行에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遲延利子에 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외하였다.²⁾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모델법은 각국의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法律을 마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 UNCITRAL의 電子署名統一規則

1997년 2월 뉴욕에서 개최된 UNCITRAL은 電子署名 및 認證機關에 관한統一規則을 마련하고자 제 31 차 회의를 가졌다. 電子署名은 電子商去來에 수반한 去來約定을 체결하고 물품이나 권리를 이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電子署名 및 認證機關에 대한 통일된 규범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UNCITRAL은 각국이 電子署名에 관한立法를 추진하고 공통된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電子署名統一規則(案)을 제정하였다. 이는 電子署名, 기타 디지털署名 그리고 認證機關 등의 기초적인 法的 效力에 대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여 電子商去來를 규제하는 法制의 統一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規則은 電子署名에 관한 모든 問題, 예컨대 公共政策에 관한 法, 行政法, 消費者保護法 및 刑法 등에 적용되지 않고 商去來 行爲의 사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제정하였다.

(4) ICC의 GUIDECA

‘디지털로 보장되는 國際商去來의 一般慣例’(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이하 GUIDECA 이라 칭함)은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의 電子商去來 프로젝트(Electronic Commerce Project)에 의하여 정보보안 실무작업반(Information Security Working Party)에서 작성한 것으로, 電子商去來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電子商去來에 대한 국제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촉진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1995년 11월 ICC는 電子商去來의 法的 側面과 國際的으로 연결된 登錄 및

2) 尹光云·張斗彩·金皓浩, 電子商去來論, 三英社, 1999, pp.107~108.

認證機關의 설립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ICC와 電子商去來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電子商去來와 관련된 電子署名의 사용, 이를 위한 認證機關의 役割 등 제반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담당할 새로운 작업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 GUIDEC은 「電子署名의 國際認證에 관한 統一慣行」(Uniform International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Practices : UIACP)라는 이름으로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제목에 「保障」(Ensure)이라는 용어를 넣기로 하고 명칭도 GUIDEC로 변경하였다.³⁾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電子商去來에서 이용되는 기술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GUIDEC의 주요 내용과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취지가 있다. 즉, 電子商去來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아 용어의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법체제하에서 現行法 및 慣行上으로 디지털 文書를 어떻게 보장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GUIDEC은 「保障 内지 證明」(ensuring and certification)의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시스템의 保安問題와 공개키 암호化(public key cryptography) 기법과 관련이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의 保障이나 안전한 認證과 관련된 간단한 標準慣行 내지 勸告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大陸法과 英美法上의 問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GUIDEC에서는 현재의 去來慣行에 따라 去來當事者間에 危險과 責任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署名者, 認證機關 및 이에 의존하는 當事者들의 權利와 責任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GUIDEC에서 권장하는 基本政策은⁴⁾ 첫째, 안전하게 電子去來를 할 수 있도록 국제 거래계의 역량을 제고한다. 둘째, 真正性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保障 및 認證 方法에 대한 법률상의 원칙을 확립한다. 셋째, 믿을 수 있는 保障 및 證明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한다. 넷째, 電子情報 시스템의 사용자들을 詐欺나 에러로부터 보호한다. 다섯째, 기준 政策·法律·慣習·慣行과 保障 및 證明技術 사이의 조화를 기한다. 여섯째, 새로 등장하는 保障 및 認證 시스템에 있어서 참가자의 責任關係를 분명히 한다. 일곱째, 保障 및 認證技術의 개발과 안전한 電子商去來와의 관련성을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린다.

3) <http://my.netian.com/~profsjh/wyc/guidec2.htm>.

4) 尹光云의 2인, 前揭書, pp.109~110.

GUIDEC는 UNCITRAL 모델법에 규정된 電子署名에 관한 현행 國際法上의 處理方式을 원용하고 확대한 것이다.

2. 電子商去來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1) 美國

최근 美國에서는 電子商去來의 발전을 막고 있는 法들이 주로 書面의 要件을 규정한다는 인식과 확실한 電子商去來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따른 法律의 制定 및 改正을 단행하고 있다. 1990년 美國辯護士協會(American Bar Association : ABA)가 ‘모범 EDI去來當事者 協約書’(Model EDI Trading Partner Agreement)를 발표한데 이어 1995년에는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이 제정되었다. 그후 미국의 統一州法委員會 全國會議(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 NCCUSL)에서 統一商法典 제 2편을 개정하였고, 각 주마다 상이한 電子商去來에 관한 法的 規律의 統一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電子的 技法 또는 컴퓨터화한 技法을 이용한 去來를 지원하기 위해 ‘統一電子去來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제정을 추진하였다.⁵⁾ 또한 미국은 각 주마다 電子署名法을 제정하여 電子署名 내지 電子通信에 法的 效力を 부여하고 그의 認證, 保安, 否認禁止, 責任의 配分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BA는 電子商去來 및 情報技術分科에 情報安全委員會(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 : ISC)를 설치하여 1995년 ‘電子署名指針’(Digital Signature Guideline)을 공표하고, 電子商去來의 法的 安全 및 情報安全과 情報技術에 관한 問題를 연구함으로써 電子署名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리고 電子署名에 관하여는 유타(Utah)주가 1995년 ‘디지털署名法’(Digital Signature Act)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일리노이(Illinois)주에서 ‘電子商去來安全法’(Electronic Commerce Security Act)을 제정함으로써 많은 주에서 電子商去來에 관한 法律을 정하였거나 立法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은 國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

5) NCCUSL,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1999, 12.13. Final Draft 참조.

터넷 電子商去來에 대한 課稅의 중지를 추진하고, 인터넷상에서도 著作權·知的財產權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 프로그램의 輸出統制를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2) 유럽

독일은 1997년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제법'을 제정하여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法은 일명 멀티미디어법이라고도 불리워지며 이는 통일된 單一法이 아니라 원격서비스에 관한 법률, 원격서비스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署名에 관한 법률이라는 3개의 법률과 6개의 기타 법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이중 '디지털署名에 관한 法律'(Signaturgesets-SigG)은 디지털署名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정함은 물론 認證機關과 認證書에 관하여 조직적 틀을 마련하고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1997년 電子文書와 디지털署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法律을 제정한바가 있고, 덴마크도 디지털署名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英國의 通商產業部에서는 1997년 3월 암호기술과 認證機關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電子署名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立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Electronic Communication Act'를 1999년 7월 공표해 두고 있다.

(3) 아시아

日本의 경우 通商省과 法務省의 주관하에 電子商去來에 대한 입법 추진을 단행하고 있으며, 특히 法務省에서는 1996년 7월 電子去來法에 관한 研究會를 설치하여 電子去來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法的 問題點에 관해 民法 및 商法의 입장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997년 '디지털署名法'(Malaysia Digital Signature Bill)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디지털署名自體와 利用을 규율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다.

3. 電子商去來에 관한 우리나라 立法例

(1) 電子去來基本法

情報化 時代의 도래에 따라 電子文書에 대하여도 書面文書와 동일한 수준의 法律의 效力を 부여하고 電子去來의 信賴性 確保, 消費者保護, 電子去來 促進을 위한 施策의 推進 등 電子去來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일반인이 안전하게 電子去來를 할 수 있도록 하고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電子去來基本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法은 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 國際標準化, 共同研究開發 등 相互主義에 입각한 國際連繫와 가능한 규정을 둘으로써 電子去來의 포괄적 법이며, UNCITRAL 모델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중 적용범위는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去來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電子文書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함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電子文書 및 電子署名의 效力, 個人情報保護, 公認認證機關, 電子去來의 促進, 電子去來振興院 및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整 및 消費者保護에 관한 내용이 있다.

(2) 電子署名法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電子文書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電子文書의 安全과 信賴性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電子署名의 法的 效力を 인정하고, 공인 認證機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法律이 오래 전부터 요청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國家社會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電子署名法의 제정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언급한 電子去來基本法과 같이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電子署名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범위를 좁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電子署名에 대하여 電子去來基本法에서는 “電子文書를 작성한 作成者の 신원과 당해 電子文書가 그 作成者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

내는 전자적 형태의 署名을 말한다.”(기본법 2 조 5 호)고 규정한 반면, 이 법에서는 “電子文書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電子文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電子署名 생성키(비밀키)로 생성한 電子文書에 대한 고유한 情報를 말한다.”(2조 2호)고 하여 그 범위를 이른바 디지털署名에 한정하고 있다.

(3)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최초의立法例로서 法律 제 4479 호로 제정되었다. 그 제정목적은 貿易業務의 自動化를 촉진하여 貿易節次의 簡素化와 貿易情報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貿易業務의 處理時間과 費用을 절감하여 產業의 國際競爭力を 높임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1 조)

이 법에서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電子署名을 포함한 電子資料를 말한다.”(제 2조 7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電子文書交換方式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作成名義人 표시와 그 認證效果 및 方法 등에 대하여, “電子署名은 電子文書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作成者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記號 또는 符號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 2조 8호). 따라서 電子文書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래의 문서에서 작성자가 서명·날인하는 형식과 같이 電子署名을 반드시 해야 電子文書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법에서는 電子署名의 效力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貿易業者 등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電子文書상의 서명은 무역관련 법령 등이 정한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電子文書上에署名을 한 名義人은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제 14 조). 이 규정은 電子文書에 있어서 문서상의 名義人 問題 등 認證效果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電子署名은 종래의 문서에서 서명·날인을 한 효과와 같이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4) 工業 및 에너지 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이 법은 產業의 國際競爭력 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法律 제 4824 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서 電子文書와 電子署名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백히 하고, 法的 證據能力을 인정하였다. 이 법에서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또한 「電子商去來」라 함은 공동의 표준을 사용하여 電子化한 상업적인 去來를 말한다.”(제 2 조 5 항)라고 규정함으로써 商去來에 있어서 電子文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5)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등에 관한 法律⁶⁾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情報通信網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情報通信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個人情報 to 보호하여 情報社會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法律에서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2 조 5 항). 이 법에서는 電子文書의 效力 등에 관하여, “電子文書와 그 문서상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作成者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電子署名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2 조 3 항). 이와 같이 電子文書에 표시된 電子署名은 기존의 일반문서에 名義人으로 표시된 직인 등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6) 情報化 促進基本法

情報化 促進基本法은 1995년 8월 4일 법률 제 4969 호로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情報화를 촉진하고 情報通信產業의 기반을 조성하며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6) 이 법률은 1999년 5월 24일 개정되었으며, 2000년 7월에 재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III. 電子商去來契約과 관련된 主要 法的 問題

1. 電子文書에 관한 法的 問題

(1) 電子文書의 文書性

우리나라 電子去來基本法에 의하면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電子文書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장치가 없다면 눈으로 인식이 어려우며, 데이터의 수정이나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만일 法的으로 전통적 서류만을 고집한다면 電子文書에 대한 文書性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⁷⁾

최근 컴퓨터로 작성한 電子文書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송수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종이가 아닌 電子文書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電子文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傳統的 書類가 갖는 機能⁸⁾ 뿐만 아니라 동등한 法的 效力を 가져야 한다. 電子文書가 法的으로 效力を 갖기 위해서는 證憑資料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것의 前提條件으로서 電子文書가 信賴性과 安定性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電子文書의 信賴性 및 安定性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수단이 구비된다면⁹⁾ 電子文書도 종이문서와 같이 동일수준의 文書性을 인

7) 미국의 경우 美國의 統一商法典에서는 “500달러 이상의 物品賣買契約은 當事者 사이에 契約締結을 立證하기에 충분한 文書의인 證據가 있고, 또한 法的拘束力이 있는 兩當事者의 署名이 있는 경우에만 契約으로서의 法的效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法에서도 10파운드 이상의 賣買契約은 文書에 署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전통적 문서의 기능은 크게 3 가지가 있는데 ①정보전달기능(Informative Function), ②입증기능(Evidential Function), ③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이다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3, pp.103~104).

9)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통신망사업자(Service Provider)와 이용자간의 약정(Service Provider & Interconnection Agreement)을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상에 명문화하는 방법과 ②표준화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에 포함시켜 명문화하는 방법, ③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바꾸고 보호조치 강구의무를 통신망사업자 및 이용자에게도 적합한 안전조치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文書性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먼저 現재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제 13 조 및 제 16 조,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제 17 조의 2, 自動車管理法 제 69 조 및 형법 제 227 조의 2 등에서 電子文書의 文書性을 직·간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電子去來基本法 제5조에서 電子文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電子文書의 效力 및 文書性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UNCITRAL 모델법 제 6 조에서도 법률이 정보가 書面으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데이터文書에 포함된 정보가 그 후의 열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때에는 그 데이터文書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제 6 조 1 항), 제 1 항의 규정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으로 되어 있든 法律이 書面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정보의 효과만을 규정하든 관계없이 적용한다(제 6 조 2 항)고 규정하여 電子文書의 有效性과 拘束力を 부여하고 있다.

(2) 電子文書의 證據性

電子文書의 이용은 자료내용의 證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法的 問題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電子文書가 사용되면서 傳統的 書類와는 달리 새로운 形態의 記錄이나 文書가 이용되는 가운데 紛爭發生時 當事者들이 이용하는 電子文書가 중요한 法的 證據로서 機能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傳統的 書類와 달리 形體가 없는 電子文書에도 종이書類에 대해 認定해 오던 것과 같은 法的 證據能力을 認定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傳統的 書類의 경우 기록된 資料는 署名 또는 口頭에 의해 真本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資料內容의 證憑은 가능하다. 만일 傳統的 書類가 變造되거나 偽造되면 專門的인 檢查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紛爭이 발생하면 證憑書類로 認定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믿고 去來하는 當事者와 第3者에게 安定性을 제공한다.

그러나 電子文書의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만 있다면 누구든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内容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電子文書의 内容을 出力 또는 修正을 할 수 있다. 問題는 이러한 電子文書의 内容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變造나 僞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¹⁰⁾ 따라서 傳統的 書類를 電子文書지로 대체하기 위한 技術的・實務的 次元에서 標準化 및 自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電子文書에 대하여 傳統的 書類가 갖는 法律의 認定性의 부여와 法廷資料로서 이를 채택하지 않는 한 電子文書의 사용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法院에서 資料內容의 立證과 관련하여 電子文書를 채택할 것인가의 與否는 電子文書를 證憑資料로 認定할 것인가의 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¹¹⁾ 일반적으로는 純粹적이고 적합한 資料만이 證憑資料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電子文書가 證憑資料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論爭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에서 제정한 UNCUTRAL 모델법에 의하면 데이터 文書¹²⁾의 效力과 관련하여 데이터 文書 형태의 자료는 충분한 證據力を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따라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어떠한 證據法原則도 i) 그것이 데이터 文書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ii) 證據를 제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수하여 제출할 수 있는 最上의 證據인데도 불구하고原本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서의 데이터 文書의 效用性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9 조 3 항), 또한 우리나라 電子去來基本法¹⁴⁾도 “電子文書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證據能力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電子文書의 證據能力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2. 電子署名에 관한 法的 問題

(1) 電子署名의 意義

특정서류의 真正性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署名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

10) R. Bradgate, Evidential Issues of EDI, *EDI and the Law*(ed. by I. Walden), (London : Blenheim Online Publications, 1989), p.9.

11) 宋啓儀, EDI去來의 法律의 問題,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第 257 號, 1993. 7, p.15.

12) 데이터 文書(Data Message)란 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레스, 멜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UNCITRAL 모델법 제 2 조 참조).

13) UNCITRAL 모델법 제 8 조 참조.

14) 電子去來基本法 제 7 조.

로 署名(signature)은 去來內容의 일부라기보다 그 表示 또는 形式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署名者의 認證을 가져야 한다. 즉, 署名은 文書 또는 기록에 누가 署名을 하였는가를 나타내어야 하고, 他人이 本人의 授權 없이는 생성하기 어려워야 한다. 둘째, 文書의 認證을 가져야 한다. 즉, 署名은 署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署名된 대상이나 서명 자체를 偽造 또는 變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確定的 行爲이어야 한다. 즉, 署名은 承認的 機能과 法的으로 완전한 거래를 하였다는 의미를 설정하는 確定的 行爲이어야 한다. 넷째, 效用性을 가져야 한다. 즉, 署名과 그 生成 · 確認節次는 署名者認證과 文書認證 양자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電子署名은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통상 電子的 環境에서는 文書의 원본은 사본과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自筆署名 또는 手記署名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 書面上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추적을 당하지 않고 이를 가로채거나 변경하는 것이 쉬우며 詐欺의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書面에 기초한 거래에서의 署名의 기능을 대신하는 각종의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電子署名(electronic signature)이라 부른다. 電子署名은 一般文書의 署名과 같이 電子文書에 있어서 그 作成者와 内容의 真正을 證明할 수 있는 電子的 技法을 말한다.

電子式署名의 概念에 관하여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에서는¹⁵⁾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作成者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記號 또는 符號를 말한다"고 하여 電子式署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電子署名이 있어야만 法律上 유효한 EDI文書로서 認定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또한 우리나라 電子署名法¹⁷⁾에서는 電子署名의 정의에 대해 '電子文書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電子文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¹⁸⁾을 이용하여 電子署名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電子文書에 고유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정의는 電子去來基本法 등 다른 법규에서의¹⁹⁾ 정의와 동일 개념이며, 따라서 電子署名이란 電子文書를 작성한 作成

15)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8 항.

16)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7 항.

17) 電子署名法 제 2 조.

18)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電子署名법 제 2 조).

者의 신원을 확인하여 주어 그 電子文書가 作成者 本人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電子文書의 信賴性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전자적 형태의署名이라고 할 수 있다.

(2) 電子署名의 法的 效果

電子文書의 경우 文書의 真正性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技法에 의한 디지털署名(Digital Signature)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電子署名은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電子署名의 일반적 法的 效果로서는 真正性, 無缺性, 否認封鎖, 書面 및 署名 要件의 充足과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들 수 있다.

첫째, 真正性(authenticity)은 電子文書의 근원에 관한 것, 즉 그 文書가 누구로부터 전송되었으며 진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真正性은 실제적인 去來要件임과 동시에 法的 要件이다. 受信人은 電子文書의 真正性을 믿을 수 있어야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 記錄이 法院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하여는 真正性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署名은 電子文書의 真正性을 뒷받침할 수 있다. 電子文書의 受信人은 디지털署名에 의하여 그 文書의 근원, 즉 그 文書가 送信人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개키와 비밀키는 신원증명이 된 署名者와 결합되어 있고 각 署名者에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키는 署名者와 文書를 유효하게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디지털署名은 送信人の 공개키를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비밀키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또 디지털署名은 送信인이 文書의 근원으로서의 자기의 신원을 확인할 의도로 부가되었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둘째, 無缺性(integrity)은 電子文書의 正確性 및 完全性에 관한 것, 즉 受信人이 수령한 電子文書가 送信人이 전송한 文書와 동일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가, 그리고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이다. 無缺性도 실제적인 거래

19) 電子署名의 정의에 관한 법률규정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 조 2 항,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12 호 및 제 48 조의 4의 2 항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제 8 조 1 항 등에 나타나 있다.

요건임과 동시에 법적 요건이다. 受信人이 電子文書를 믿고 행동하기 위하여는 그 文書의 無缺性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無缺性은 특히 電子商去來에서 온라인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그 去來를 증명하기 위하여 電子紀錄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디지털署名은 電子文書의 無缺性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署名이 이에 대응하는 공개키의 사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소유물로 되는 경우, 그 文書는 디지털署名이 생성된 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셋째, 否認封鎖(non-repudiation)는 送信人에게 電子文書를 귀속시키는 것, 즉 文書의 根源, 發信 또는 受信과 文書內容의 無缺性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됨을 뜻한다. 否認封鎖는 안전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공격자로부터가 아니라 합법적인 다른 電子文書 利用者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 특성이 있다.

否認封鎖는 去來의 양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즉 送信人을 구속함은 물론 受信人도 文書를 수신하였음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된다. 否認封鎖는 電子文書를 신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文書를 귀속시키려고 할 때 법적 요건이 된다.

디지털署名에 의하여 文書의 真正性과 無缺性이 확립될 수 있는 경우, 送信人은 電子文書의 내용과 그 文書를 전송하였다는 것을 否認하는 것이 배척된다. 디지털署名은 送信인이 비밀키의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한, 위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受信人も 그 文書를 위조할 수 없다. 受信인이 送信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디지털署名을 생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디지털署名은 送信인의 비밀키로써만 해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書面 및 署名 要件의 充足이란, 法律은 중요한 契約에 관하여 文書를 書面으로 작성할 것(writing)을 요구하고 또 계약상 拘束力を 받을 자가 署名 할 것(signature)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法律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역시 書面 및 署名 要件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電子文書는 書面文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文書가 '書面으로서' '署名될 것'을 요구하는 법규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署名이 書面 및 署名 要件를 충족하는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디지털署名의 사용이 書面 및 署名 要件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權利는 디지털署名이 受信人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

는 경우, 受信人은 일반적으로 그 文書를 신뢰할 권리(right to reply)가 있고 디지털署名을 한 送信人은 그 구속력을 받는다. 受信人の 信賴의 合理性 與否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受信人이 認證書에 등재된 사실을 포함하여 알았던 사실 또는 통지를 받았던 사실, 디지털署名된 文書의 價值, 信賴者와 登錄人 사이의 去來過程, 去來慣習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디지털署名을 신뢰한 자는 공개키認證書를 신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署名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 受信人은 예정된 送信人的 확인을 위하여 그 文書를 신뢰할 필요가 없고 설사 신뢰하였더라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무리 電子署名이 언급한 法的 效力を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에서는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去來時 마다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면 電子商去來의 속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電子商去來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電子文書의 效力を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電子署名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문제는 이러한 電子署名의 法的인 效力과 拘束力を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電子署名에서의 署名者の 義務와 責任 그리고 認證機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電子署名과 認證機關

非接觸, 非對面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 기반의 電子商去來는 匿名 또는 假名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電子商去來시 당사자나 해커에 의한 去來內容의 偽造 및 變造 그리고 送受信 行爲에 대한 否認등의 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중요하며 그 制度가 認證制度이다. 또한 電子署名을 한 사람이나 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나 기관이 진정으로 그러한 電子署名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認證할 機關이 필요한데 이것이 認證機關(Certificate Authorities)이다. 認證機關은 登錄을 신청하는 자로부터신청자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등록해 놓고 있다가, 그와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등록자의 人的事項

등을 확인하는 認證書를 발급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다.

이와 같이 電子署名과 관련하여 認證機關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 認證機關을 公的인 機關에 맡겨야 할 것인지 혹은 私的인 機關에 맡겨서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미국 유타주에서는 免許制度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公認認證機關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²⁰⁾ 公認認證機關은 電子署名 등의 技術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결방안을 제공해준다. 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當事者의 身元確認, 전송되는 情報의 變質與否 確認, 去來 當事者間 情報送受信에 대한 否認防止 등의 公認認證서비스를 個人, 法人, 團體 및 서버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電子署名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첨단의 기술과 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公認認證業務 수행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며, 公認認證機關은 일반 非公認認證業務를 수행하는 기관과는 다르게, 國家認證管理體系로 운영되므로 電子去來時 노출될 수 있는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公認認證機關에서 인증한 電子署名은 해당법률이 정하는 인감과 같은 法的 效力과 證據力を 가지게 된다.²¹⁾

그리고 認證機關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認證機關은 認證書를 발급받는 등록인의 신원과 認證書에 실린 공개키가 그 자가 보유하는 비밀키에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認證機關은 認證書와 관련하여 등록인과 디지털署名을 신뢰한 자(relying party)에 대하여 부실표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위의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는 認證書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認證機關은 이를 認證實務準則(certificate practice statement: CPS) 또는 契約으로 더 늘릴 수 있다. 認證機關은 위의 責任危險을 인수하기에 충분한 金融資金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責任을 제한하기 위하여 認證書에 有效期間(expiration date)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認證機關은 認證書에 다른 형식의 責任制限(예컨대, 금액한도)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를 信賴責任限度(reliance limit)라고 부른다.

20) 電子署名法 제 4조 1항 및 2항.

21) <http://www.signgate.com/signlaw/signlaw.html>.

둘째로, 認證機關은 認證書 신청인에 대하여 안전하게 디지털署名을 하고 디지털署名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電子署名을 정당하게 확인하는 자가 認證機關認證書(certificatation authority certificate)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認證機關은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認證實務準則(CPS)을 이용할 수 있다. 또 認證機關은 일단 발행한 認證書의 有效性 또는 信賴性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알려진 사실을 상당한 기간내에 登錄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셋째로,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認證書의 중요성 때문에 認證機關은 登錄人이 認證書의 停止(suspension)를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認證書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 認證機關은 登錄人이 認證書의 取消(revocation)를 청구한 경우에는 認證書를 取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認證書의 취소는 認證書의 停止와는 달리 철회할 수 없고 영구적이다. 認證機關은 認證書에 나타난 일정한 표시가 허위인 경우, 認證機關의 비밀키가 훼손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등록인의 청구 또는 동의의 없이도 認證書를 취소 또는 정지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경우가 있다.

넷째로, 認證機關은 電子署名에 관한 서비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信賴性 있는 시스템(trustworthy system)을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信賴性 있는 시스템이라 함은 ① 침입과 誤造作으로부터 합리적인 安全性이 있고, ② 합리적인 수준의 有用性, 信賴性 및 정확한 運營을 제공하며, ③ 예정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④ 일반적으로 承認되는 安全原則을 지지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절차를 말한다. 또 認證機關은 信賴性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 및 대리인에 관한 實務規則을 확립하여야 하고, 認證書의 發給·停止 또는 取消에 관한 중요사실을 기록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電子商去來契約締結에 관한 法的 問題

(1) 電子商去來契約과 電子的 意思表示

電子商去來契約이란 電子商去來의 성립을 위하여 일정한 法律效果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2인 이상의 當事者가 電子的 方式에 의하여 행하는 意思表示의 合致에 의해 성립하는 法律的 行爲를 말하며, 電子商去來에 있어서는 契約의

請約과 承諾, 契約의 成立 및 契約의 履行이 모두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²⁾ 이러한 電子商去來契約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를 電子的 意思表示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사람의 의사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직접 표시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표시되어지는 意思表示로 정의할 수 있다.²³⁾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電子的 意思表示는 종래의 自然的 意思表示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自然的 意思表示와 電子的 意思表示의 개념을 새로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먼저 電子的 意思表示의 독자적인 개념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알아보면, 電子的 意思表示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간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그 근거로써 컴퓨터는 창조적인意思形成能力을 결여한 기계인 동시에 權利能力이 없는 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電子的 意思表示를 인간에게 귀속시키게 될 경우, 電子的 意思表示는 意思表示라는 기존의 법률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電子的 意思表示를 별도의 새로운 법률사실로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電子的 意思表示에 의한 契約은 기존의 自然的 意思表示에 의해 이루어지는 契約의 法律行為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²⁴⁾

다음으로 電子的 意思表示의 독자적인 개념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 알아보면, 電子的 意思表示를 기존의 법률사실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電子的 意思表示가 自然的 意思表示와 완전히 동일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컴퓨터를 기존의 전달도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컴퓨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작업명령 등에서 人間의 意思表示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의 기능은 그러한 구체적인 人間의 意思表示를 기계적 작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電子的 意思表示는 종래의 自然的 意思表示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또한 컴퓨터의 기능을 프로그램, 데이터, 작업명

22) 尹光云의 2인, 前揭書, p.189.

23) 최경진, 電子商去來와 법, 현실과 미래, 1996, p.105.

24)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학술발표대회, 1998.12, p.2.

령 등에 포함된 인간의 구체화되지 않은 包括的 意思에 따라 人間의 意思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이는 컴퓨터가 인간의 의사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화되지 않은 세부적인 意思表示의 내용과 成立에 간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電子的 意思表示는 컴퓨터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個別의 意思表示의 成立에 관한 인식이 없이도 컴퓨터 스스로가 입력된 결정기준에 따라 意思를 표시한다. 또한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식될 수 없는 기계언어로 변환되어 인간이 해독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電子的 意思表示의 발생 시점과 거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⁵⁾

이상의 두가지 견해중에서 電子的 意思表示는 後者의 경우와 같이 自然的 意思表示와는 달리 特殊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法理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보인다.

(2) 電子商去來契約의 成立要件

電子商去來契約은 契約法의 一般法理에 따른다. 契約法上 契約成立은 當事者間 意思의 一致가 필요하지만, 보통 當事者一方이 請約을 행하고, 다른 當事者가 이에 承諾한다는 意思의 合意에 의하여 契約이 成立된다. 이러한 계약의 成立要件을 法的 側面에서 살펴보면 ①同意의 真實性, 즉 當事者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合意(manifestation of mutual assent)라야 한다. ②約因(consideration)²⁶⁾이 있어야 한다. ③去來의 目的物, 去來의 方法이 合理的(legality of object)일 것. ④當事者들의 行爲能力이(capacity of the parties) 있을 것 등이다.²⁷⁾

그리고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契約의 成立方法에 관하여는 請約에 대한 同意表示의 承諾은 文書에 의해 證明될 필요는 없고, 그 方法에 관하여 一切의 要件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證言에 의하여(by means of witness) 證明하

25) 최경진, 전개서, p.106~107.

26) 여기서 約因이란 約束과 交換으로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것 즉, 約束者의 利益이나 受約者의 不利益을 의미한다(A.G. Guest,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78).

27) 吳世昌, 貿易契約論, 東星社, 1991, pp.41~51 參照.

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²⁸⁾ 承諾의 方法은 원칙적으로 自由로 하고 있다. 그러나 請約者에 의해 承諾의 方法이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方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²⁹⁾ 契約締結의 方法은 통상 請約時에 承諾의 方法이 指定되어진 경우에는 指定된 通信手段을 이용하여 承諾해야 하며, 다른手段을 이용할 경우에는 請約者の 承認이 없다면 그 契約은 無效로 된다.³⁰⁾

그러나 컴퓨터의 普及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電子商去來契約을 締結하거나 또는 法的拘束力이 있는 契約當事者間의 合意의 의사표시로서 電子的 意思表示가 종전의 수단 즉, 傳統的 종이書類나 기타手段을 대신하여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電子商去來契約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請約과 承諾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 請約과 承諾은 口頭, 書面 또는 기타 行爲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電子的 意思表示도 有效하다고 할 수 있다.

(3) 電子商去來契約의 成立時期

일반적으로 請約者の 請約을 被請約者が 承諾함으로써 契約은 성립하지만, 國際的인 契約에서는 兩當事者들이 空間的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契約의 成立時期는 여러가지 面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契約義務의 違反에 의한 損害는 관련된 그 義務가 개시된 이후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請約에 대한 承諾이 이루어져 契約이 성립되면 그 請約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契約의 成立時期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對話者間의 契約과 隔地者間의 契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民法은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에 관하여 이른바 到達主義을 취하고 있으나(민법 제 111 조 1 항), 隔地者間의 契約의 성립에 관하여는 承諾의 意思表示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하여 이른바 發信主義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 531 조). 반면, 對話者間의 契約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民法 제 111 조 1 항의 원칙에 따라 到達主義에 의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電子商去來契約의 성립시점을 發信主義로 할 것인지 아니면 到達主

28)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統一法(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LF), 第 3 條 參照.

29) 末川, 契約法·上卷, 岩波書店, 1975, p.43.

30)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Boston, Little Brown Company, 1991, p.266.

義로 할 것인지는 隔地者間의 契約인가 혹은 對話者間의 契約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電子商去來契約이 對話者間의 契約인지 혹은 隔地者間의 契約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즉, 電子的 意思表示에 의해 이루어지는 送信者와 受信者間의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메일서버에 전송된 電子的 意思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隔地者間의 契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意思表示가 컴퓨터 채팅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접적 對話者間의 去來와 다를 바 없으며 또한 相對方의 意思表示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對話者間의 契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계약들의 구별기준은 距離的·場所的·時間的 關係에 의거해 구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 對話나 信號에 의한 것인가의 與否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³¹⁾ 실제 실시간(realtime) 또는 대화식(interactive)으로 電子商去來契約이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고 電子商去來契約을 매개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나 메일서버에 보관되어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시간이 경과되어 契約이 체결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電子商去來契約은 對話者間의 契約이기 보다는 隔地者間의 契約으로 보아 發信主義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電子的 意思表示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送信者の 컴퓨터가 구체화된 意思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상대방의 컴퓨터로 보내지는 순간 電子的 意思表示의 發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發信主義에 의하면 이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컴퓨터망의 하자로 인한 危險 등은 受信者が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隔地者間의 契約에서는 發信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나, 意思表示가 發信과 동시에 도달되는 電子商去來에 있어서는 비록 隔地間이라고 할지라도 發信主義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³²⁾ 즉, 情報通信技術의 발달과 電子商去來契約이 보편화되어지면 契約을 체결하기 위한 請約과 承諾의 電子的 意思表示는 거의 동시적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에 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對話者間의 契約과

31)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 p.131.

32) 内田貴, “電子商取引と法”, NBL, No.601号, 1996, p.19.

동일시되어 到達主義에 따라 契約이 성립된다.³³⁾ 본인의 의견도 電子去來에 있어서 데이터 文書의 전송속도가 실제로 동시적인 점과 향후 실시간(real-time) 文書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到達主義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관해 UNCITRAL 모델법에서는 모델법 제정회의 초기에 UNCITRAL 모델법상에 도달주의를 명기할 것이 논의되었으나 비엔나協約이 到達主義를 채용하고 있어서 이 원칙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두지 않게 되었다. 또한 貿易自動化促進에 관한 法 제15조 1항은 電子文書의 到達時期는 送信人이 보낸 文書가 受信人の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到達主義를 취하고 있다.

만일 각국의 立法이 發信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電子商去來契約에 대하여 到達主義를 채택한다고 하는 原則을 改正하거나 혹은 當事者들간의 合意에 의한 契約으로 到達主義를 취한다는 約定을 두는 것이 확실하게 분쟁을 제거할 수 있다.

(4) 電子商去來契約의 準據法

인터넷을 이용한 電子商去來가 國제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일지라도 國境의 概念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電子商去來에서는 準據法의 選擇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準據法에 관련된 問題에 대해 알아보면, 통상 傳統的 去來에 있어서는 去來와 귀속되는 공간은 어느 정도 특정을 지울 수도 있고 거래의 시간적 간격도 존재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의 경우에는 공간적 특성이 어렵기 때문에 종래의 領土權의 概念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傳統的 準據法決定 및 適用方式이 假想的 空間인 인터넷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假想空間을 새로운 法的 領域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國際的 規範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與否가 問題가 된다.

契約의 準據法 選擇에 있어서 當事者自治의 原則을 인정하지 않고 客觀的으로 결정된 契約履行地나 契約締結地의 法을 準據法으로 하는 國家도 있지만, 國際的으로는 契約의 準據法 選擇은 自由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涉外私法에서도 “法律行爲의 成立 및 效力에 대하여 當事者의 意思에 따라

33) 尹光云, 前揭書, pp.198~199.

적용할 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법외사법 제 9 조) 當事者自治의 原則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電子商去來의 경우 去來當事者가 適用 準據法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정해진 準據法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한된 去來當事者 사이에 약속되어지고 표준화되어진 電子文書交換去來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의 경우에는 그러한 約定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當事者들간에 準據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의 涉外私法에 따라 準據法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涉外私法 제 9 조 단서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行爲地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美國統一商法典 2 B 편 제 107 조 (b) 항에서도 準據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接近(access)契約과 복제물의 전자적 송신을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때의 라이센스의 소재지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c) 항에서는 (b) 항에 의하여 미국 이외의 법이 準據法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法域에 소재하지 않는 當事者의 權利에 대하여 統一商法典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하는 경우에만 그 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와 가장 중요한 관련(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이 있는 주의 法律을 準據法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C協約 제 4 조 1 항에서도 “當事者間에 明示的 또는 默示的 準據法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契約의 準據法은 當該 契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法을 가진 國家의 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原則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國際的인 電子商去來의 경우 情報交換이 동시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契約當事者에 따라 準據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電子商去來事業者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電子商去來에 관하여 보다 완화되거나 전무한 국가나 지역의 법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認證機關이나 決濟媒介機關, 通信事業者 등과 복잡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國際協約 등 假想空間에서의 準據法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結論

인터넷은 단순한 情報의 통로가 아닌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國境이라는 개념 없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사이버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情報技術이 고도로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여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는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電子商去來는 기존의 거래형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다르다. 電子商去來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기술적 환경지원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電子商去來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부분에서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契約에 장애가 되는 법적 문제들에 국한하여 검토를 하였다.

첫째, 電子文書에 관련한 法的 問題로서 電子文書가 기존의 문서와 같이 문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電子文書의 信賴性 및 安定性 확보에 대한 保安手段이 구비된다면 電子文書도 종이문서와 같이 동일수준의 文書性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證據性에 관해서도 法院에서 立證의 資料로 電子文書를 채택할 것인가의 與否는 電子文書를 證憑資料로 認定할 것인가의 問題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UNCITRAL 모델법 및 우리나라 電子去來基本法 등 여러 法規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電子文書와 관련한 法的 論議는 기존의 書類와 같이 동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電子署名에 관한 法的 問題로 電子署名 특히 디지털署名은 電子文書에 관한 종래의 書面上의署名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電子商去來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電子署名과 관련하여 認證機關의 문제이다. 認證機關은 信賴性이 있는 시스템의 運營 및 認證書의 발급에서 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사실을 정해진 法規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지만 보다 안전한 電子商去來가 확립될 것이다.

셋째, 電子商去來契約에 따른 法的 問題로, 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契約을 체결시키기 위한 電子的 意思表示는 종래의 自然的 意思表示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지만, 電子的 意思表示는 自然 的 意思表示와는 달리 特殊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法理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電子商去來契約을 체결하기 위한 要件으로 電子的 意思表示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契約의 成立 時期에 대해서는 電子商去來契約이 對話者間의 契約인지 또는 隔地者間의 契約인지에 따라 發信主義과 到達主義로 구분된다. 電子商去來契約은 契約의 特性上 到達主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며, 準據法 採擇에 대해서도 契約者自由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電子商去來契約에 관한 法的 問題를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電子商去來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立法的 方案을 제시하면, 電子商去來의 기초가 되는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UNCITRAL 모델법이나 우리나라의 電子商去來基本法이 제정되었다고 하나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法制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行政的 次元에서의 입법취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司法的 次元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立法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參 考 文 獻

-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학술발표대회, 1998.12, p.2.
- 孫晉華, 電子資金移替制度, 한국은행 인력개발실, 1995.
- 吳炳皓, “電子的 意思表示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논문, 1996.
- 吳世昌, 貿易契約論, 東星社, 1991.
- 송계의, “EDI 거래의 법률적인 문제” 중재, 1993. 6 월호, 7 월호.
- 尹光云 · 張斗彩 · 金皓浩, 電子商去來論, 三英社, 1999.
- 이진우, “電子文書교환에 관한 법적 문제”, 변호사 24 권, 1994.
- 鄭完容, “電子商去來의 法的 問題點에 관한 考察”, 慶熙法學, 제 32 권 제 1 호, 1997. 8.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6.
-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 31 권 1 호, 한국법학원, 1998.3.,
- 内田貴, “電子商取引と法(2)”, NBL, No.601, 1996.
- 末川, 契約法 · 上卷, 岩波書店, 1975.
- Guest A.G.,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Oxford, Clarenden Press, 1984.
- Ian Walden and N. Savage, “The Legal Problem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Boston, Little Brown Company, 1991.
- <http://my.netian.com/~profsth/ec/digsig.htm>.
- <http://my.netian.com/~profsth/wyc/ec-law.htm>.
- <http://my.netian.com/~profsth/wyc/guidec2.htm>.
- <http://www.signgate.com/signlaw/signlaw.html>.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Contract

Han, Sung-il

Since the internet is open to public in 1990, electronic commerce(EC) user has increase rapidly. Now EC is considered not only as communication method but also as new economical activities. EC is a kind of new commerce model which uses electronic means. And EC has global characteristics so that many country's legislation which regulates it differently makes an obstacle to vital of E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problems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First,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whether electronic document has same legal function like traditional documents. Second, electronic signature must has authenticity, integrity, non-repudiation, writing and confidentiality in order to use looks like common signature. Finally, electronic contract is concluded on principle of mutual agreement. It is apparent that the concept of arrival is applied to the date and place in conclusion of electronic contract.

Keywords :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Signature